

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자동계좌이체 약관 개정 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17. 4. 12.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p> <p>제 1 조(목적) ~ 제 11 조(자동이체 통합관리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p> <p>제 12조 (면책 사항)</p> <p>은행은 고의·중과실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</p> <p style="color: blue;">1. 천재지변, 정전,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 또는 처리불능</p> <p style="color: blue;">2. 핀테크 기업의 전산장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</p> <p style="color: blue;">3.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핀테크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접근수단의 도용, 위조, 변조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</p> <p style="color: blue;">4.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의 소홀, 기타의 사고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</p> <p>제 13조(관할법원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p> <p>제 14조(약관의 변경)</p> <p style="color: blue;">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변경 예정일 직전 1개월간 영업점 및 은행 인터넷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.</p> <p style="color: blue;">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에게 불리한 경우, 은행은 이를 서면, 전자우편 중 사전에 합의한 하나의 방법으로 변경 시행 전 최소 1개월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동)</p> <p>제 1조(목적) ~ 제 11조(자동이체 통합관리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동)</p> <p>제 12조 (면책 사항)</p> <p>은행은 고의·과실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</p> <p style="color: blue;">1. 핀테크 기업의 전산장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</p> <p style="color: blue;">2.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핀테크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접근수단의 도용, 위조, 변조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</p> <p style="color: blue;">3.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의 소홀, 기타의 사고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</p> <p>제 13조(관할법원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동)</p> <p>제 14조(약관의 변경)</p> <p style="color: blue;">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(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)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이용자가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고</p> <p>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변경권고에 따른 내용 반영</p> <p>중과실을 과실로 문구 변경 조항 삭제</p> <p>조항 제상 “</p> <p>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으로 변경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전까지 개별 통지하며, 사전에 합의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에 신고된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개별 통지합니다. 다만, 기존 사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 사용자는 은행에 신고한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 변경 시 즉시 은행에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, 변경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은행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</p> <p>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사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”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④ 사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 <p>제 15조(다른 약관과의 관계) (좌동)</p>	<p>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③ 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의 약관의 변경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“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마지막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.”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마지막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제 15조(다른 약관과의 관계) (좌동)</p>	<p>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으로 변경 “</p> <p>“</p>

### 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미적용

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이전에 영업점, 인터넷뱅킹 이용매체에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개월간 게시하고,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을 게시한 후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이의가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.